

	퇴직수당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7. 2. 2.
		최종개정일자	2016. 3. 2.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퇴직수당(이하“수당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〈개정 2009.9.28.〉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직원(일반직)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〈개정 2009.9.28.〉〈개정 2012.11.26.〉

제3조(퇴직의 구분)

1. 명예퇴직 :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만 20년 이상 근속(휴직기간 제외)인 자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
2. 희망퇴직 :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(휴직기간 제외)한 자가 폐과 또는 과원으로 퇴직을 희망할 경우〈개정 2009.9.28.〉

〈개정 2012.11.26.〉

제4조(지급대상의 제한) 〈개정 2012.11.26.〉

- ①매 학기 수당지급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,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감사기관과 경찰,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정년퇴직 기한이 1년 미만인 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④교직원 인력수급계획, 예산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⑤퇴직 후 1년 이내에 타 학교로 임용 될 경우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급액) ①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.〈개정 2012.11.26.〉

정년 잔여기간별 구분	산 정 기 준
1. 1년 이상 5년 이하	(퇴직당시 월봉급액/2) X 정년 잔여 월 수
2. 5년 초과 10년 이하	(퇴직당시 월봉급액/2) X [60+(정년 잔여 월 수-60)/2]

- ②월 봉급액은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한다.
- ③퇴직으로 인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승진직전의 월봉급을 적용한다.
-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여월 수 계산에 있어 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
- ⑤명예퇴직수당 지급산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.
- ⑥희망퇴직 수당지급은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, 제

6조(퇴직공고) 공고 시 공지한다.<개정 2009.9.28.><개정 2012.11.26.>

제6조(퇴직신청절차) ①명예, 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퇴직일 60일전에 퇴직신청서(퇴직수당 지급신청서[서식1호])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명예퇴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6.3.2>

제7조(지급신청)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<서식 1호>를 첨부하여 행정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의 심사결정) ①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퇴직여부를 결정한다.

②총장은 제1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상위직명(직급)교직원
2. 장기근속 교직원
3. 상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자 <개정 2016.3.2.>

제9조(지급대상자의 통지) 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총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직원 제출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급시기)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승인을 받고,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예우) 직원이 <서식 1>에 의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승인을 받았을 때는 차상위급 승진소요 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.

<개정 2012.11.26.>

제13조(시행규칙) 근속연수의 계산,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지급 절차 및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〈서식 1호〉

(명예 . 희망) 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접 수		결재	담당자	해당부서 처장	총 장
일 자					
번 호					

성 명	(한글)	주민번호	
	(한자)		
소 속		직 위	
주 소			
퇴직예정일		정년 월	년 월 일
부임년월일		근속연수	년 월
수당청구액		정년잔여기간	년 월
산출내역			

퇴직수당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첨부 :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상병 퇴직자에 한함)1부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소속부서장 : (인)

확인	인사담당자	(인)	연금담당자	(인)
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

〈서식 2호〉

(명예 · 희망) 퇴직수당 지급통지서

수 신 :

(명예 · 희망)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첨부서류를 사무처로 제출 바랍니다.

다 음

소 속		직 위	
성 명	(한글)	(한자)	
주민번호			

1. 퇴직연월일 : 20 년 월 일
2. 퇴직수당 결정액 :
3. 퇴직수당 지급예정일 :
4. 퇴직수당 지급처 :

※ 첨부 : 1) 사직원 1부
2) 사무인수인계 및 비품, 기자재 인수인계 확인서 1부
3) 교내 새마을금고 채무 확인서 1부

20 년 월 일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